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현황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현황

연 혁

- 1991년 11월 10일 협의회 회칙 시행
- 2000년 3월 9일(제54차 총회 개최)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회 설립 발기인 대회 개최
전국시군구의회의장회 회칙 제정
- 2000년 3월 30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 행정자치부 신고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65조
- 2000년 4월 12일 행정자치부에서 설립신고 수리통보 접수
- 2003년 11월 5일 기초의회 증가(회원수 232개 ⇒ 234개)
- 충북 증평군, 충남 계룡시의회 신설
- 2004년 2월 27일 명칭변경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2006년 6월30일 기초의회 감소(회원수 234개 ⇒ 230개)
- 제주도 4개 시군구의회 폐지
- 2010년 7월 1일 기초의회 감소(회원수 230개 ⇒ 228개)
- 마산·창원·진해시 통합
- 2012년 7월 1일 기초의회 감소(회원수 228개 ⇒ 227개)
- 연기군 세종시 편입
- 2014년 7월 1일 기초의회 감소(회원수 227개 ⇒ 226개)
- 청주시·청원군 통합

▶ 회 원 수 : 226개 의회 의장

계	시의회	군의회	자치구의회
226	75	82	69

▶ 임원 현황

직 위	시도 대표회장
전 국 회 장	천만호(부산 동래구)
수석부회장	성임제(서울 강동구)
부 회 장	박권중(경기 성남시), 김병국(충북 청주시), 서경식(전남 광양시)
감 사	이철우(경북 울릉군), 유원석(경남 창원시)
사 무 총 장	김영길(울산 중구)
대 변 인	문제광(대전 중구)

○ 임원의 임기 : 2015. 7. 1. ~ 2016. 6. 30.

▶ 회 의

- 총 회(년 1회) : 협의회의 중요시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보고
- 시·도대표 정례회의(매월) : 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일반안건 심의·의결
- 임시회(필요시) : 전국대회 등 주요행사 및 대표회의 소집요구 시

▶ 예 산 : 연간 904백만원(각 지방의회 부담금)

- 연간 904백만원의 예산 중 452백만원은 시·군·자치구로 교부



▶ 주요활동사항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법 개정 건의 및 정책 협의
- 시·도의회 및 시·군·자치구의회 상호간의 공동 관심사항 협의·조정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위상 정립 및 기능 강화, 의정활동 지원, 홍보 등

사무처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6, 1207호(현대토픽스)

▶ 직원 현황

구분	계	사무처장 (임기제 계약직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	전문위원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임기제 계약직원)	사무과장 (일반직 5급공무원 또는 임기제 계약직원)	직 원 (일반직공무원, 임기제 계약직원 또는 무기계약직원)			
					소계	6급	7~8급	무기 계약직
정원	8	1	1	1	5	1	3	1
현원	6	1	1	1	3	1	1	1
증감	△2				△2		△2	

※ 사무처 직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계약직원으로 구성

보 고 사 항



- ◆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
- ◆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 ◆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감사 보고
- ◆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보고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



- 2015년도 시도대표회의 개최
- 2015년도 건의사항 처리 현황
- 각계 면담 및 정책 강화 활동 간담회
- 인터뷰 등 홍보활동
- 회칙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2015년도 시도대표회의 개최

■ 회의 개최현황

계	정례회의	임시회의	비고
9	8	1	

■ 안건 심의결과 현황

구 분	내 용	처리 결과
계	14건	
건의문 채택(7건)	· 시·군·구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화 채택의 건	원안가결
	· 의회 공문서 수신자 지정 방법 개선을 위한 건의의 건	원안가결
	· 지방의회의원 여비규정 현실화 건의문(안) 채택의 건	원안가결
	· 국립공원구역 제척기준 완화 건의문(안) 채택의 건	원안가결
	· 국가보조사업 개선방안 건의문(안) 채택의 건	원안가결
	·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원안가결
	·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표준안 채택의 건	원안가결
결의문 채택 (1건)	· 지자체 과세자주권 침해에 대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공동성명서(안) 채택의 건	원안가결
협의회 운영관련 (6건)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칙 전부개정안	수정가결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 선출의 건	원안가결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칙 일부개정안	원안가결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임원 선출의 건	원안가결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 직원 임명의 건	원안가결
	·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가결



2015년도 건의사항 처리 현황

○ 총괄

계	반영(수용)	검토·추진 중	미반영(수용불가)	미회신	비고(결의안)
8건	3건	2건	2건	0건	1건

○ 내역

의결일 (안건번호)	제 명	주 요 내 용	처리기관 (회신결과)
2015.4.21. (제314호)	◦ 시·군·구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화 채택의 건	◦ 의회기 및 배지 한자 도안을 한글로 변경	전국협의회 (수용)
2015.4.21. (제315호)	◦ 의회 공문서 수신자 지정 방법 개선을 위한 건의의 건	◦ 전자문서시스템 수신자란에 시·군·구의장을 표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행정자치부 (수용불가)
2015.10.20. (제322호)	◦ 지방의회의원 여비규정 현실화 건의문(안) 채택의 건	◦ 지방의원 여비지급기준에 대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관련법 개정	행정자치부 (수용)
2015.10.20. (제323호)	◦ 국립공원구역 제척기준 완화 건의문(안) 채택의 건	◦ 관광자원 육성이 필요한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공원 제척 기준을 완화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 (지속검토)
2015.10.20. (제324호)	◦ 국가보조사업 개선방안 건의문(안) 채택의 건	◦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른 등급제를 도입하여 차등보조율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 국가보조금사업을 포괄보조사업으로 편입·확대하여 지방비 지출 의무 완화	기획재정부 (지속검토)
2015.11.17. (제325호)	◦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시·도와 같이 9일에서 14일로 연장	행정자치부 (수용불가)
2015.11.17. (제326호)	◦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표준안 채택의 건	◦ 표준화된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제작 규정 마련	전국협의회 (수용)



각계 면담 및 정책 강화 활동 간담회

1. 지방분권개헌포럼 제5차 준비회의

- 일 시 : 2015. 1. 7.(수) 12:00
- 장 소 : 서울역 산천봉피양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시민단체 등
- 내 용 : 창립대회 기획안, 조직구성안 검토 및 논의

2. 지방재정세제실 및 지방4대협의체 간담회

- 일 시 : 2015. 1. 13.(화) 11: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 참 석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등
- 내 용 : 2015 지방세제 추진방향 설명 및 의견수렴

3. 지방분권개헌포럼 제6차 준비회의

- 일 시 : 2015. 1. 14.(수) 12:00
- 장 소 : 서울역 산천봉피양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시민단체 등
- 내 용 : 창립대회 기획안, 조직구성안 검토 및 논의

4. 지방분권개헌포럼 제7차 준비회의

- 일 시 : 2015. 1. 21.(수) 11:00
- 장 소 : 서울역 산천봉피양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시민단체 등
- 내 용 : 창립선언문안 검토 및 확정, 공동대표단체 확정 기획안 검토

5. 행정자치부와 지방4대협의체 업무추진 간담회

- 일 시 : 2015. 1. 22.(목) 10:3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8층 대회의실
- 참 석 : 30명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재정실장, 국장, 주무과장, 주무팀장
 - 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및 연구위원
- 내 용 : 2015년 주요 업무계획 설명, 상호 협조방안 논의 등

6.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공동연구용역을 위한 협약서 체결

- 일 시 : 2015. 1. 22.(목) 14:00
- 장 소 : 금강산(청계천 시그니처타워 지하 1층)
- 참 석 : 20명(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정책연구실장, 분권지원부장 등)
- 내 용
 -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공동연구용역을 위한 협약서 체결
 - 기타 지방분권 관련 현안사항 논의

7. 지방분권개헌포럼 제8차 준비회의

- 일 시 : 2015. 1. 28.(수) 11:0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시민단체 등
- 내 용 : 창립선언문안 검토 확정, 공동대표단체 확정, 기획안 검토

8.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회

- 일 시 : 2015. 1. 28.(수) 14: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
- 주 최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참 석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 중앙부처, 언론사 등
- 내 용 :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 및 질의·답변



9.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 일 시 : 2015. 2. 3.(화) 10: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C/S룸
- 참 석 : 행정자치부 차관 및 지방재정정책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
심의관,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 지방4대협의체 추천위원
및 민간위원
- 내 용 : 지방재정 관련 현안사항 보고 및 토의
 - 2015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운영계획
 - 2015년도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계획(안)

10. 지방세연구원 간담회

- 일 시 : 2015. 2. 3.(화) 14:00
- 장 소 : 한국지방세연구원 대강당
- 주 최 : 한국지방세연구원
- 참 석 : 행정자치부,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4대협의체, 광역 및 기초자치
단체 등
- 내 용 :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논리개발과 정책대안 마련
 - 지방세 네트워크포럼 연속과제 착수보고
 -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지방복지세, 취득세

11. 지방자치 20년 평가위원회 제1차 회의

- 일 시 : 2015. 2. 9.(월) 14: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
- 참 석
 - 행정자치부 : 차관(회의주재), 지방행정실장, 기조실장, 지방재정실장,
대변인, 소관 국장
 - 외부위원 : 자치발전기획단장, 지역발전기획단장,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추진위 민간위원 등
- 내 용
 - 지방자치 20년 평가 계획 설명
 - 평가 방향 및 평가주체별 업무분담 협의

12. 지방4대협의체 T/F팀 회의

- 일 시 : 2015. 2. 10.(화) 10:00
- 장 소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
- 참 석 : TF팀 9명(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각 협의체별 2명)
- 내 용
 -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환원,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 지방4대협의체의 지방자치법 개정의견 수렴·조율

13.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개정 관련 공청회

- 일 시 : 2015. 2. 12.(목) 14:00
- 장 소 : 서울 중구 구민회관 소강당(1층)
- 참 석 : 손희준(좌장,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 발제자 : 최두선(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장)
 - 토론자 : 서울시 강동구의회 황인구 의원 외 5명
 - 초청자 : 약 150여명(지방의회, 지방4대협의체, 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 내 용 :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방안 토론

14. 한국의회학회 2015년도 신년 학술회의

- 일 시 : 2015. 2. 26.(목) 14: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 최 : 한국의회학회 및 한국입법정책학회
- 후 원 : 국회방송
- 참 석 : 한국의회학회 회장, 국회의원, 지방4대협의체 등
- 내 용 : 제20대 국회 총선 대비 중대선거구제 모색

15. 청렴사회 확립을 위한 반부패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

- 일 시 : 2015. 3. 2.(월) 14:20
-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참 석 : 국회의장, 지방4대협의체 등 12명
- 내 용
 - 국가대개조를 위한 반부패정책의 진단
 - 국가 반부패시스템의 연계성 제고 방안 토론 등



16.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규정 개정 관련 회의

- 일 시 : 2015. 3. 3.(화) 11: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804호
- 참 석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기획관 및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 내 용 :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중앙·지방간 협조 체계 구축 및 재난안전 조직 신설 추진 관련 논의

17.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관계관 회의

- 일 시 : 2015. 3. 3.(화) 13:3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CS룸
- 참 석 :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장, 시·도 법무담당, 지방4대협의체 등
- 내 용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 설명 및 의견 수렴
 ※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법령내용 및 법령 제·개정사항 미 반영 사례 등 전파를 통하여 관련 자치법규 일괄 정비 추진, 지방 의회 적극적인 협조 요청

18.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지방4대협의체 간담회

- 일 시 : 2015. 3. 3.(화) 14: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지방재정세제실회의실
- 참 석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지방4대협의체 등 11명
- 내 용 : 지방공기업 혁신방안 브리핑, 의견수렴 및 논의

19. 지방자치 20년맞이 지방자치를 만들어낸 사람들 흠키밍데이

- 일 시 : 2015. 3. 5.(목) 11:0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참 석 : 지방자치관련 정·관계 인사, 학계 전문가, 언론인,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 주 제 : 대화로 나누는 「지방자치 시작과 현재, 그리고 내일」
- 내 용 : 지방자치 20년을 맞는 소회 및 발전방안 의견 청취

- 우천규 사무총장 건의 내용
 - 지방의원 국외연수에 대한 긍정적 여론 형성 요구
 - 지방의원 보수체계 현실화 건의
 - 지방의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현실화 요구

20. 지방복지세 연구관련 1차 팀회의

- 일 시 : 2015. 3. 13.(금) 16:30
- 장 소 : 한국지방세연구원(서울 여의도)
- 참 석 : 교수, 연구원, 지방4대협의체 등 9명
- 내 용 : 지방복지세 연구관련 의견 교환

21.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관련 기획좌담회

- 일 시 : 2015. 3. 17.(화) 15:00
- 장 소 : 서울시의회 회의실
- 참 석 : 서울시의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학계전문가 등
- 내 용 :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관련 토론 및 의견 교환

22. 지방4대협의체 지방자치발전 T/F팀 회의

- 일 시 : 2015. 3. 17.(화) 10:30
- 장 소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
- 참 석 : T/F팀 9명(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각 협의체별 2명)
- 내 용 :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 및 지방자치 20주년 토론회 준비 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검토 등

23.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간담회

- 일 시 : 2015. 3. 19.(목) 11:50
- 장 소 : 칸지고고 광화문점
- 참 석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 내 용 : 지방자치발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개요 설명 등
 - 기초지방의회 건의(요구)사항 미반영
 - 의견제출분 검토 수정변경 요구



24. 지방자치 20년 평가 관련기관 실무회의

- 일 시 : 2015. 3. 19.(목) 14: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회의실
- 참 석 : 자치제도과장 등 3명, 지방4대협의체
- 내 용
 - 평가주체별 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 논의
 - 평가 세부 방향에 대한 의견 조율

25.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 및 기자회견

- 일 시 : 2015. 3. 30.(월) 11:30
- 장 소 : 프레스센터(서울 광화문)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장, 지방4대협의체, 언론기자 등
- 내 용
 - 특·광역시 자치구·군의회 폐지 철회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 지방의원선거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
 - 지방의원 의정비제도의 합리적 개선
 -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환원
 - 지방의원 전문성 제고로 지방의회 활성화
 - 지방4대협의체 공동성명서 채택
 - 지방자치법 개정안 협의
 -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공동용역 진행상황 보고
 - 지방자치 20년 평가 관련 사업 논의
 - 지방재정 확충 관련 논의 등

26. 지방자치 20주년 토론회

- 일 시 : 2015. 3. 30.(월) 14:00
- 장 소 : 프레스센터(서울 광화문)
- 주 최 : 지방4대협의체, 경향신문
- 후 원 : 국회 지방자치·지방살리기포럼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장, 지방4대협의체, 중앙지방공무원, 언론기자, 학회, 시민단체 등
- 내 용 :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개선방향 관련 토론

27. 정의화 국회의장 방문 정책 건의

- 일 시 : 2015. 3. 30.(월) 16:00
- 장 소 : 국회의장실
- 참 석 : 심우성 회장, 이종민 부회장, 우천규 사무총장, 이성재 사무처장
- 내 용
 - 특·광역시 자치구·군의회 폐지 철회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 지방의원선거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
 - 지방의원 의정비제도의 합리적 개선
 -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환원
 - 지방의원 전문성 제고로 지방의회 활성화
 - 지방의원에 대한 국회의장상 제정
- 국회의장 답변
 - 정당공천제 폐지는 예전부터 적극 동의하는 정책임
 - 해외연수는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함
 - 의정연수시 초선·재선 의원과 3선 이상 다선의원을 구분하여 교육 내용의 차별화 필요
 - 국회가 지방의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성 있음, 국회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기구 설치 방안 모색
 - 지방의원 사기 양양을 위한 국회의장상 제정(지방자치의 날 시상토록 준비)
 - 지방의원 활동상황 홍보 및 역할 강조
 - 국회차원에서 지방의회를 도울 수 있는 사항 발굴, 최대한 지원하겠음

28.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제도 개선 회의

- 일 시 : 2015. 3. 31.(화) 14: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
- 참 석 :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 시·도 결산담당, 지방4대협의체 등
- 내 용 : 결산검사제도 개선방안 및 지방회계법 제정방안 의견수렴 및 토론



29. 지방분권개헌청원운동 선포식

- 일 시 : 2015. 4. 1.(수) 14:00
-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주 최 :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 참 석 : 국회의장, 양당 원내대표, 수원시장, 국회의원, 지방4대협의체 등 300여명
- 내 용 : 지역부문대표단 결의, 결의문개헌시민교육계획·청원운동 계획 발표

30.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중앙권한이양 제2실무위원회 제1차 회의

- 일 시 : 2015. 4. 3.(금) 14:00
- 장 소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회의실
- 참 석 : 실무위원, 기획단, 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계공무원 등
- 내 용 : 국토교통부 1개 법률, 5개 기능, 15개 사무 심의 의결

31.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 일 시 : 2015. 4. 14.(화) 14:00
- 장 소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및 담당자, 연구진
- 내 용 :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 및 의견 교환

32. 지방소득세 관련 대책회의

- 일 시 : 2015. 4. 22.(수) 14:00
- 장 소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실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담당자
- 내 용 : 지방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협의

33. 2015년 상반기 지방재정 전략회의

- 일 시 : 2015. 4. 29.(수) 10:3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 참 석 : 중앙부처, 지자체, 지방공기업, 지방4대협의체, 민간 전문가 등

- 내 용 :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 발전방안을 모색
 - 제1세션 : 지방·국가재정 운영방향 발표
 - 제2세션 : 지방재정 분야별 발전방안 발표 및 토론

34. 네트워크포럼 지방복지세 회의

- 일 시 : 2015. 4. 29.(수) 11:00
- 장 소 : 한국지방세연구원
- 참 석 : 최병호 교수, 김근진 연구원, 지방4대협의체 담당자 등 9명
- 내 용 :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복지세 도입방안 논의

35. 지방자치 20주년 국회토론회

- 일 시 : 2015. 5. 6.(수) 10: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및 제1소회의실
- 주 최 : 국회 지방자치포럼, 국회 지방살리기포럼
- 후 원 : 지방4대협의체
- 참 석 : 국회의원, 전문가, 지방4대협의체, 중앙지방공무원, 시민단체 등 100여명
- 내 용 : 지방자치 20년의 평가와 과제 관련 토론
 - 지방재정 확충,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

36.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수도권 토론회

- 일 시 : 2015. 5. 7.(목) 14:0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주 최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 참 석 : 시·도의회 의원, 지방4대협의체, 학회, 시민, 공무원 등
- 내 용 :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토론

37. 지방자치 20년 평가위원회 제2차 회의

- 일 시 : 2015. 5. 12.(화) 15: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
- 참 석
 - 행정자치부 : 지방행정실장, 지방재정실장, 자치제도정책관 등



- 외부위원 :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자치발전기획단장, 자치 관련 학회장, 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민간위원 등
- 연구위원 : 지방행정연구원장, 담당 연구진 등
- 내 용 : 지방자치 20년 평가 추진상황 보고
- 평가 부문별 연구결과 중간발표(지방행정연구원, 지방4대협의체, 연구진)

38. 2015년도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제5차 세미나

- 일 시 : 2015. 5. 14.(목) ~ 5. 15.(금)
- 장 소 : 강원도 강릉시 녹색도시체험센터 다목적홀
- 후 원 : 행정자치부, 강릉시, 강원도청
- 참 석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4대협의체, 시·도 및 시·군 관계 공무원, 언론인 등
- 내 용 :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최종보고회
- 지방세제 개편에 관한 실질적인 정책대안 개발과 논리 확충

39. 2015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 일 시 : 2015. 5. 28.(목) 14: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C/S룸
- 참 석 : 행정자치부 차관 및 지방재정정책관,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 지방4대협의체 추천위원 및 민간위원
- 내 용
- 어린이집 보조교사 배치 대체교사 확대
-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
- 사업규모 및 보조율 등 사업내용 확정 시 위원회에 보고

40. 2015년 자치법제 발전협의회

- 일 시 : 2015. 5. 29.(금) 14:3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화홀
- 참 석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지방4대협의체, 대학 및 연구소
- 내 용
-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방안 및 자치법제 주요 쟁점 논의
-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보조금 조례 제·개정 동향 및 대응방안

41.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 개통식

- 일 시 : 2015. 6. 4.(목) 11:00
- 장 소 : 국회 접견실
- 참 석 : 국회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사무총장, 사무처장 등
- 내 용 :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 개통식 및 시연

42. 중앙권한 지방이양 제2실무위원회 제2차 회의

- 일 시 : 2015. 6. 5.(금) 14:00
- 장 소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회의실
- 참 석 : 위원장 및 실무위원,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등
-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 등 2개 부처, 8개 법률, 22개 기능, 61개 사무 심의 의결

43. 자문위원과의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15. 6. 9.(화) 11:00
- 장 소 : 올림픽파크텔 런던홀
- 참 석 : 자문위원, 회장, 사무총장, 사무처장, 수석전문위원
- 내 용 : 기초지방의회 정책사항 자문 및 지방자치 20년 평가 회의

44.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연구용역 중간보고

- 일 시 : 2015. 7. 3.(금) 10:30
- 장 소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실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수석전문위원, 연구진, 교수 등
- 내 용 : 지방4대협의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연구용역 중간보고

45. 지방세 3법 개정(안) 및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관련 법 개정안 발의 동향

- 일 시 : 2015. 7. 14.(월) 14: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 참 석 : 각 시도 세정과장,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등
- 내 용
 - 지방세 3법 개정(안) 설명
 -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관련 법 개정안 발의 동향
 - 「과세자료 활용 아이디어」 공모 계획



46. 2015년 제3차 지방분권포럼 토론회

- 일 시 : 2015. 7. 15.(수) 14:0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시민단체 등
- 내 용 : 정당공천 이대로 좋은가 찬반 논의
 - 발제자 : 이승중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자 : 문제광 대전광역시 대표회장
- 주 최 : 한국지방자치학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47. 2015년 제3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 일 시 : 2015. 7. 15.(수) 14: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 참 석 : 행정자치부 차관, 국무조정실 국장, 기획재정부 심의관 및 담당 과장, 지방재정실장 및 국장, 중앙부처 담당공무원, 실무위원 등
- 주요 심의안건
 - 2016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 지방비 부담수준 적정성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및 조립사업 등 기준 보조율 인하 사업

48. 지방분권개헌 원탁 토론회

- 일 시 : 2015. 7. 22.(수) 14:00
- 장 소 :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
- 참 석 : 회장, 대변인, 수석전문위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국회의원, 전문가, 정·관계, 원로 등
- 내 용 : 왜 지방분권개헌인가? 각계인사로부터 듣는다.
- 토론자 : 전문가, 정·관계, 원로 등
- 주 최 : 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
- 후 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일보

49. 의정활동 지원 협력을 위한 국회도서관과 기초지방의회 간 상호정보 교류 MOU 체결

- 일 시 : 2015. 8. 6.(목) 11:00

- 장 소 : 국회도서관 제1회의실
- 참 석 : 국회도서관 관장 및 실·과장,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대변인, 사무처장 등
- 협약 주요내용
 - 국회도서관과 시·군·자치구의회 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협력
 - 국회도서관의 지식정보자원을 각 협의회 및 시·군·자치구의회에 제공하여 의정활동 지원
 - 지방의회에서 생성된 각종 의정활동 정보의 디지털아카이빙 및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자료 활용도 제고
 - 국회도서관과 각 시·군·자치구의회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50. 언론인클럽 기자 간담회

- 일 시 : 2015. 8. 24.(월) 12:00
- 장 소 : 올림픽파크텔 서울홀
- 참 석 : 회장, 언론인클럽(중부매일 국장 외 7인)
- 인터뷰 주요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과 재정분권
 - 의회의 역할과 기능
 - 정당공천제 폐지 필요성
 - 지방재정 확대 및 효율성 강화,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 자치경찰제와 지방행정-교육행정 연계 일원화 등

51. 지방자치 20년 평가위원회 제3차 회의

- 일 시 : 2015. 8. 26.(수) 10: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자치발전기획단장, 자치관련 주요 학회장, 민간위원, 지방행정연구원장, 담당 연구원 등
- 내 용
 - 지방자치 20년 평가 추진상황 보고
 - 평가 부문별 연구결과 중간발표



52. 중앙권한이양 제2실무위원회 제4차 회의

- 일 시 : 2015. 8. 27.(목) 14:00
- 장 소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회의실
- 참 석 : 실무위원,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등
- 내 용
 - 기획재정부 소관 1개 기능, 6개 사무 지방이양 심의
 - 환경부 소관 5개 기능, 15개 사무 지방이양 심의
 - 환경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9개 기능 지방이양 심의

53.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 시의회 실무자 간담회

- 일 시 : 2015. 8. 28.(금) 10:00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참 석 : 2015년 협력 대상 10개 시의회의 총괄 및 전산 실무직원, 협의회 사무과장, 도서관 정치행정자료과장, 전산사무관, 행정사무관 등
- 내 용
 -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 소개 및 시연
 - 시의회 협력 관련 향후 계획·일정 안내
 - 시의회 의정자료 통합 및 서비스 협력방안 및 전산실무 협조사항 논의

54. 2015년 제4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 일 시 : 2015. 9. 8.(화) 10: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CS룸
- 참 석 : 행정자치부 차관, 지방재정정책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 지방4대협의체 추천위원 및 민간위원
- 심의 안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신설
 - 지방세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 합리적 지방세 감면 운영을 위해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

55.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연구용역 최종보고

- 일 시 : 2015. 9. 11.(금) 11:00
- 장 소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및 담당자, 연구진
- 내 용 : 지방4대협의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연구용역 최종보고
 - 지방분권의 헌법적 명분화(헌법 전문에 명시)
 -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신설(기본권 목록에 신설)
 - 입법권, 조세권, 일반행정권, 재정권의 지방분권화
 - 현행 단원제를 지양하고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 채택 등
- 경과보고
 -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연구사업을 위한 지방4대협의체 공동협약체결(2015.1.22.)
 -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연구 착수보고(2015.4.14.)
 -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연구 중간보고(2015.7.3.)
 -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연구 최종보고(2015.9.11.)

56. 중앙권한이양 제2실무위원회 제5차 회의

- 일 시 : 2015. 9. 18.(금) 13: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실무위원, 민간위원,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등
- 내 용 :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 5개 법률, 11개 기능, 39개 사무 지방이양 심의

57. 제3회 지방자치박람회 추진위원회 4차 점검회의

- 일 시 : 2015. 10. 5.(월) 14:30
- 장 소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연회장
- 참 석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세종시 부시장, 행사관련 담당자, 지방4대협의체 담당자, 열린사회시민연합 사무처장, 박람회 자문단 등
- 내 용 : 행사별 추진상황 보고, 협조사항 논의 및 행사장 현장 확인 등



58. 지방자치 미래비전 회의

- 일 시 : 2015. 10. 7.(수) 10: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
- 참 석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자치제도정책관, 자치제도과장, 지방4대 협의체 등
- 내 용 : 지방자치 20년 평가 결과 및 미래비전 실무자 회의

59. 지방4대협의체 실무자 간담회

- 일 시 : 2015. 10. 13.(화) 10:30
- 장 소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실
- 참 석 : 지방4대 협의체 담당자
- 내 용 :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 관련 업무협의 등

60.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방문

- 일 시 : 2015. 10. 15.(목) 15:00
- 장 소 : 새누리당 당대표실
- 참 석 : 천만호 대표회장, 성임제 수석부회장, 김병국 부회장, 서경식 부회장, 김영길 사무총장, 문제광 대변인, 사무처장
- 내 용 : 정당공천제 폐지, 사무직원 인사권 환원, 특·광역시 자치구·군 의회 폐지 계획 철회 등 정책 건의

61.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 방문

- 일 시 : 2015. 10. 15.(목) 15:30
- 장 소 :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실
- 참 석 : 천만호 대표회장, 성임제 수석부회장, 김병국 부회장, 서경식 부회장, 김영길 사무총장, 문제광 대변인, 사무처장
- 내 용 : 정당공천제 폐지, 사무직원 인사권 환원, 특·광역시 자치구·군 의회 폐지 계획 철회 등 정책 건의

62.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간담회

- 일 시 : 2015. 10. 22.(목) 11:30
- 장 소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실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 내 용 : 제3회 지방자치의 날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 관련 주요 업무 협의

63. 지방자치발전위원회 3기 2실무위원회 회의

- 일 시 : 2015. 10. 23.(금) 14:00
- 장 소 : 정부청사 중회의실
- 참 석 : 실무위원,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등
- 내 용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3기 실무위원 위촉장 수여 및 안건심의

64. 지방자치 20년 평가위원회 최종 회의(제4차)

- 일 시 : 2015. 10. 23.(금) 16: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CS룸
- 참 석 : 행정자치부 차관, 지방행정실장, 지방재정세제실장, 소관 국장, 자치발전기획단장, 지역발전기획단장,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지방자치 관련 주요 학회장, 민간위원, 연구진 등
- 내 용 : 지방자치 20년 평가 결과보고 및 발전방향 논의

65.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기총회

- 일 시 : 2015. 10. 26.(월) 11:00
- 장 소 : 전남 여수시(MVL 호텔)
- 참 석 : 천만호 대표회장
- 내 용 : 2015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 참석

66. 제3회 지방자치박람회 추진위원회 5차 점검회의

- 일 시 : 2015. 10. 27.(화) 10:30
- 장 소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연회장
- 참 석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세종시 부시장, 세종시 행정복지국장, 행사관련 담당과장, 지방4대 협의체 담당자, 열린사회시민연합대표 등
- 내 용 : 박람회 행사별 운영계획 및 분야별 지원대책 보고 등



67. 제3회 지방자치박람회

- 일 시 : 2015. 10. 29.(목) 11:00
- 장 소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등
- 참 석 : 회장, 대변인,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주민 등400여명
- 내 용 : 제3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박람회 개막식, 비전 선포식, 지방자치 20년 대토론회 등
- 추진배경 : ‘지방자치의 날’ 을 맞아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성과 공유

68.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

- 일 시 : 2015. 10. 29.(목) 14:30
- 장 소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소연회장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장, 사무처장, 수석전문위원 등
- 내 용
 - 지방4대협의체장 상견례
 - 2015년 지방4대협의체 공동 추진사업 보고
 - 자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제도 구축
 - 지방분권 개헌 공감대 확산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 등

69. 지방4대협의체 실무자 간담회

- 일 시 : 2015. 11. 2.(월) 15:00
- 장 소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실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실무자
- 내 용 :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 관련 업무 협의 등

70.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간담회

- 일 시 : 2015. 11. 4.(수) 11:30
- 장 소 : Chai797 청계천점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 내 용 :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 회의 안건 확정

71.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

- 일 시 : 2015. 11. 9.(월) 15:00
- 장 소 : 프레스센터 국화실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장
- 논의사항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 지방재정 확충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 자치조직권 확대
 - 지방분권 개헌 공감대 확산
 - 지방4대협의체 협력활동 강화
 -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 공동주관
 - 지방의회 발전 방안
 -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 합의사항
 - 지방4대협의체 공동연합체 구성
 - 논의된 9개 사항에 대한 공동 노력 등

72. 지방재정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

- 일 시 : 2015. 11. 9.(월) 18:3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지방재정세제실장실
- 참 석
 - 지방재정세제실장, 지방재정정책관, 재정협력과장,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 내 용
 - 지방재정법 개정안(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관련 협조 요청
 - 기타 지방재정세제 관련 의견 수렴

73. 2015년 자치법규 발전을 위한 합동 워크숍

- 일 시 : 2015. 11. 26.(목) 14:00
- 장 소 : AW컨벤션센터 하림각(서울 종로구)
- 참 석 : 중앙부처, 지방4대협의체, 지자체, 대학, 연구원, 법제처 등
- 내 용
 - 표준 조례안 지원 제도의 현황 및 개선 방안



- 자치법규 입법예고안 사전검토 제도의 소개 및 협력 방안
- 중앙부처·지자체 간 협업 방안 논의 등

74. 중앙권한 지방이양 제2실무위원회 제7차 회의

- 일 시 : 2015. 11. 27.(금) 14:00
- 장 소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중회의실
- 참 석 : 실무위원,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등
- 회의안건 : 농림축산식품부 5개 기능, 29개 사무 지방이양 심의

75. 조례 개선과제 지방4대협의체 합동 검토 회의

- 일 시 : 2015. 12. 2.(수) 11: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법제지원센터
- 참 석 : 법제처,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수석전문위원
- 내 용
 - 자치법규 지원제도 및 조례 개선과제 50건에 대한 의견 수렴
 -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홍보 협조 요청

76. 중앙권한 지방이양 워크숍

- 일 시 : 2015. 12. 4.(금) 14:00
- 장 소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국제회의장
- 참 석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등
- 내 용
 - 지방이양 현안 설명
 - 사무이양 연구용역 추진현황
 - 지방일괄이양법 및 행·재정 지원, 특별행정기관 정비 방안

77. 중앙권한 지방이양 제2실무위원회 제8차 회의

- 일 시 : 2015. 12. 11.(금) 14:00
- 장 소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회의실
- 참 석 : 실무위원,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등
- 안 건 : 해양수산부 1개 법률, 5개 기능, 25개 사무 지방이양 심의

78. 제3회 지방자치박람회 성과 보고회

- 일 시 : 2015. 12. 18.(금) 10:3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1012호
- 참 석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전문위원, 열린사회시민연합 등
- 주요내용
 - 지방자치박람회 종합 결과 보고
 - 각 행사별 성과 및 개선방안 보고
 - 향후 발전방안 논의 등

79.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

- 일 시 : 2015. 12. 21.(월) 12:30
- 장 소 : 청와대 영빈관
- 참 석 : 전국시군구의회의장(198명)
- 주요내용
 - 초청 감사인사(천만호 회장)
 - 오찬 및 소감발표(정책사항 건의)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김영길 울산대표회장)
 -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환원 및 의정비제도 개선(우천규 전북대표회장)
 - 건배제의(김병국 충북대표회장, 남영숙 경북 상주시의회 의장)
 - 기념사진 촬영

80.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간담회

- 일 시 : 2015. 12. 22.(화) 11:00
- 장 소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 주요안건
 - 지방자치단체 연합체 결성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추진
 - 지방자치박람회 공동 주관
 - 지방4대협의체 공동자문단 구성·운영



지자체 과세자주권 침해에 대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공동성명서(안)

지방자치단체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 자주과세 자주권이 제고되고 지방세정이 발전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기업단체들의 과도한 우려로 지자체의 세무조사권을 박탈하는 등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취지가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과세자주권이라는 토대 위에 지방재정이 발전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가는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강화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지방소득세의 과세권은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는 지자체가 수행한다.

셋째, 국세청과 지자체의 중복 세무조사 등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와 상호 협력해야 한다.

2015. 7. 30.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인터뷰 등 홍보활동

- **“자치의정” 2015년 1월호 신년사**
 - 내용 : 지방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
- **지방세연구원 신년사**
 - 내용 : 새해! 지방세연구원에 바란다.
- **월간 “공공정책” 2015년 1월호 신년사**
 - 내용 : 성년을 맞은 지방자치, 새로운 지방자치 열어가야
- **월간 지방행정 2015년 1월호 기고**
 - 내용 : 2015년 지방의회 운영방향
- **“자치의정” 7,8월호 기고**
 - 내용 : 지방의회 부활 4반세기의 회고와 과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칙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1 장 총 칙</p> <p>제1조 (명칭) 이회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칭한다.</p> <p>제2조 (목적) 협의회는 <u>국회 및 중앙정부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공동 관심사를 협의 · 조정하여 중앙 및 지역 간의 화합을 이루고, 지방자치 발전과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u></p> <p>제3조 (사무소) ①협의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전국의 특별시, 광역시, 도의 의장협의회 사무소는 각 시 · 도 내에 둔다.</p> <p>제4조 (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국시 · 군 · 자치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와 중앙정부 등 관계 기관에 건의 및 조정 · 협의한다. 2. 시 · 도 및 시 · 군 · 자치구 상호간의 공통 관심사항 협의 및 조정 3. 전국시 · 군 · 자치구의회의 위상정립 및 기능강화와 의정활동 지원 · 홍보 	<p>제 1 장 총 칙</p> <p>제1조 (명칭) (현행과 같음)</p> <p>제2조 (목적) ---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 ----- -----.</p> <p>제3조 (사무소) (현행과 같음)</p> <p>제4조 (사업) (현행과 같음)</p> <p>1~4. (현행과 같음)</p>

4. 지방자치제도, 발전 및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조사 연
구 및 자료배포

5. 국회 및 중앙정부의 대국민 정책
홍보

6. 기타 협의회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제5조 (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임기) ①협회의 회원의
임기는 각 시·군·자치구의회의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②승계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 의장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임무) 모든 회원은 협의
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삭제)

5. 그 밖의 협의회 발전을 위한 모든사업

제5조 (회원의 자격) -----
각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임기) ①협회의 회원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날로
부터 회원이 되며 의장직에서 퇴임과
동시에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②-----
남은 임기-----.

제7조 (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협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협의회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매년 1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제 2 장 특별시·광역시·도협의회(신설)

제8조 (특별시·광역시·도협의회 구성)

①특별시·광역시·도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는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소속 시·군·
자치구 의회의 의장을 회원으로 구성한다.(신설)

②시·도협의회 회장은 해당 시·도협의회
에서 호선한다.(신설)



제 2 장 시·도대표회

제8조 (시·도대표회) 협의회는 의사결정기구로 시·도대표회를 둔다.

제9조 (시·도대표회장의 자격) 협의회는 시·도대표회장은 전국의 특별시, 광역시, 도의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한다.

제10조 (시·도대표회장의 임기) ① 시·도대표회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시·도대표회장 중 결원이 있을 때는 해당 의장협의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며, 보궐선출된 시·도대표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시·도대표회의 임무) 시·도대표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추진한다.

1. 본 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2. 총회에 부의할 안건
3. 임원선출

제 3 장 특별시·광역시·도대표회

제9조 (특별시·광역시·도대표회 구성)

①협의회는 의사결정기구로 특별시·광역시·도대표회(이하 시·도대표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도대표회는 시·도협의회 회장으로 구성한다.**(신설)**

③협회의 회장은 시·도대표회 회장을 겸직하며 시·도대표회에서 선출한다.**(신설)**

제10조 (시·도대표회 회장 선출) 시·도대표회의 회장은 합의추대를 원칙으로 하되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무기명 투표로 선임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2차 투표로 결정한다. 2차 투표결과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 다선 의원, 연장자 순으로 회장이 된다.

제11조 (시·도대표회장의 임기) ① ----- 협회의 회장의-----
 -----.
 ②-----
 -----시·도협의회에서-----

 -----남은 임기-----.

제11조 (시·도대표회의 임무)(삭제)

- 4. 회칙제정 개정 및 폐기, 사업계획안 심의
- 5. 기타 협의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소집) 시·도대표회의 회의는 협의회장 또는 시·도대표회장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20조 규정에 따라 협의회장이 소집하여 주관한다.

제 3 장 임 원

제13조 (임원)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인
- 2. 수석부회장 1인
- 3. 부회장 11인
- 4. 감 사 2인

제14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시·도 대표회장 중 시·도대표회에서 호선한다.

제12조 (회의 소집) 시·도대표회의 회의는 협회의 회장 또는 시·도협회의 회장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제20조에 따라 협회의 회장이 소집하여 주관한다.

제 4 장 협의회 임원

제13조 (임원)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인
- 2. 수석부회장 1인
- 3. 부회장 3인
- 4. 감 사 2인
- 5. 사무총장 1인**(신설)**
- 6. 대변인 1인(신설)

제14조 (임원의 선출) ①협회의 회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출된 시·도대표회의 회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협회의 회장이 추천하여 시·도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의 회장이 임면한다.(신설)

③사무총장은 시·도대표회장 중에서 협회의 회장이 임면한다.(신설)

④감사는 시·도대표회에서 호선한다.(신설)



제15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시·도대표회장의 임기에 준한다. 다만, 본인의 사의나 유고시 그 직을 수행하지 못 할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임무) ①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협의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회계 및 업무 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사무총장

제17조 (사무총장) ①사무처의 제반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둘 수 있다.
 ②사무총장은 회원 중에서 시·도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임명한다.
 ③사무총장의 업무범위는 시·도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 규정으로 한다.

제 5 장 회 의

제18조 (회의 및 장소) ①협회의회의 회의는

제15조 (임원의 임기) -----
선출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남은 임기-----.

제16조 (임원의 기능)
 ①~③ (현행과 같음)

④사무총장은 사무총장 업무규정에 의거 사무처의 모든업무를 총괄한다.**(신설)**

제 4 장 사무총장 (삭제)

제 5 장 회 의

제17조 (회의 및 장소) ①협회의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시·도대표회로 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대표회의 의결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시·도대표회의 회의는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로 하며, 각 시·도별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를 순회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협의회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 (총회의 의결 및 보고사항)

①총회의 의결, 승인 및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협회의 중요시책 및 운영사항 보고
2. 회칙의 제정, 개정 및 폐기 승인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임원선출 보고
5. 기타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도대표회의 의결사항은 총회에 경과보고를 하며, 총회의 의결로서 시·도대표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정기총회와 시·도대표회의로 한다.

②(현행과 같음)

③-----
-----시·도
협의회를 -----

-----.

제18조 (총회) ①총회의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협회의 중요시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회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지방의회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신설)
6. 그 밖에 협의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의한 보고사항 중 이견이 있을 경우 시·도대표회에서 재심의 의결한다.

제19조(시·도대표회의) ①시·도대표회의에서는 제18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신설)

②제1항에 따라 시·도대표회가 의결한 사항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제20조 (회의 소집) 모든 회의는 협의회 회장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집하며, 협의회장은 총회 및 시·도대표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 (의결 정족수) ①협의회는 특별한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가부동수 일 때는 협의회장이 결정하고, 기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준한다.

③회의에 불참사유로 제출된 서면 위임장은 출석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제 6 장 사 무 처

제22조 (사무처) ①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대표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 규정으로 한다.

제23조 (직원의 임면) ①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사무처장은 협의회장이 추천하여 시·도대표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임면하며, 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관장한다.

제20조 (회의 소집) 회의는 협의회 회장이 -----

-----.

제21조 (의결 정족수) -----

----- 과반수 -----
과반수 -----.

②~③(현행과 같음)

제 6 장 사 무 처

제22조 (사무처) (현행과 같음)

제23조 (직원의 임면) ①(현행과 같음)

②사무처장은 협의회 회장이 -----
-----협의회 회장이
-----협의회 회장의-----
-----.

③직원은 사무처장의 추천에 의해 시·도 대표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임면한다.

③협의회는 원활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구에서는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④직원은 사무처장의 추천에 의해 시·도 대표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임면한다.

제24조 (전문위원) ①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지방자치와 협의회 발전을 위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회장이 임면한다.**(신설)**

제 7 장 전문위원 및 고문

제24조 (전문위원) ①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회장이 임면한다.

제25조 (고문) ①협의회에 고문·상임고문을 둘 수 있다.

②고문 및 상임고문은 협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자로 시·도 대표회에서 협의하여 협의회장이 추대한다.

제 7 장 자문위원 및 고문

제25조 (자문위원) 협의회 의장은 지방자치와 협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로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제26조 (고문) (현행과 같음)



제 8장 실 무 협 의 회

제26조 (구성) ①협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실무협의회는 각 시·도대표회장이 속한 의회 사무국장 및 사무과장으로 구성한다.

제27조 (기능) ①실무협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종합 계획 검토
2.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시행 검토
3. 지방자치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의
4.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사전 검토 등

제 9장 재 정

제28조 (재정) 협회의 운영재원은 다음과 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및 지원금
2. 회비 및 특별회비, 기부금
3. 기타 수입

제29조 (회계년도) 협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8장 실 무 협 의 회

제27조 (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 -----
----- 지방의회----- 또는 -----
-----.

제28조 (기능) (현행과 같음)

1. -----에
관한 사항
2. -----에
관한 사항
3. -----에 관
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9장 재 정

제29조 (재원) (현행과 같음)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및 지원금
2. **(삭제)**
2. 그 밖의 수입

제30조 (회계연도) (현행과 같음)

제30조 (예산) ①협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시·도대표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에 필수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협회장이 집행할 수 있다.

제31조 (결산) 감사는 재정의 수입·지출을 결산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재정관리) 협회 수입금은 협회 명의로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협회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장이 관리 한다.

제33조 (지출) < 삭제 >

제 10 장 보 칙

제34조 (회칙의 개정) 회칙개정은 시·도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되, 경미한 내용이나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시도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35조 (준용규정) 협회 회칙에 규정한

제31조 (예산) ①제18조에 의거 시·도 대표회의 의결로 확정된 협회의 세입·세출예산은 정기총회에-----.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 (결산) (현행과 같음)

제33조 (부담금 및 재정관리) ①각 시·군·자치구의회의 부담금 금액은 시·도대표회 회의에서 정하며, 각 시·도협회의에서 수합하여 협회에 일괄 납부한다.**(신설)**

②협회 수입금은 협회 명의로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협회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장이 관리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34조 (회칙의 개정) (삭제)

제34조 (준용규정) (현행과 같음)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라 준용한다.

부 칙

1. 본 회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 회칙은 (91년 11월 1일부터 본 회 회칙을 승인받은 날까지) 폐지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3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9.)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현행과 같음)

부 칙(2006.10.9.)

(현행과 같음)

부 칙(2007.2.22.)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2.18.)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2)
(현행과 같음)

부 칙(2011.2.18.)
(현행과 같음)

부 칙(2015.5.26.)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5년 5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문위원 위촉 경과조치) 이 개정
회칙 전에 위촉된 자문위원은 개정된
회칙에 의해 위촉된 자문위원으로 본다.

부 칙(2015.6.30.)
본 회칙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
한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 알차고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
-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역량 제고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협의회 활동 강화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기본 목표

- ◆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방의회 역량 강화
- ◆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 실현
- ◆ 지방의정 주민참여 확대·의정혁신으로 선진 지방의회상 구축

운영 방향

- ◆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발굴 및 개선
- ◆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 ◆ 지방의정활동 홍보 강화로 지방의회 위상 강화

추진 계획

- I. 알차고 내실있는 협의회 운영
- II.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역량 제고
- III.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협의회 활동 강화

중점추진시책

I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천기준이 미흡하고, 심사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주민들의 정치 불신, 정치협오의 요인으로 작용

☞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조속히 폐지하여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여야 함.

II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 현행 의정비 심의위원회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지역 간의 편차, 주민과 지방의회의 갈등으로 의정비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의원 의정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연봉액으로 지급기준액을 책정토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야 함.

III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환원

◆ 기관대립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장이 장악하고 있는 한 소신 있는 의정활동 지원 불가

☞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로 환원하여야 함.



IV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 ◆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성년의 나이에 접어들었으나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쳐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등 작금의 현실은 지방자치시대의 위기임

☞ 지방자치 정상화와 실질적인 국민주권 실현을 위하여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

V 특·광역시 자치구·자치구의회 폐지 철회

- ◆ 대의민주주의의 표본이 되어온 자치구 및 자치구의회를 폐지 하겠다는 발상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 이념을 훼손함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며 지방자치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시키는 일임

☞ 자치구 및 자치구의회를 폐지하여 관치주의로 회귀하겠다는 발상자체를 즉시 철회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을 위하여 진정한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에 중앙정치가 적극 앞장서야 함.

VI 기초지방의원선거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

- ◆ 중선거구제도의 경우 소지역간 갈등 유발, 선거비용 과다, 근접성의 민주주의 요구에 정면 배치되는 등 책임성과 대표성이 훼손되고 있음

☞ 기초지방의원선거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여야 함.

알차고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

◆ 정치 환경 변화에 대응한 협의회 활동전략 수립과 새로운 정책 대안을 연구하고 시군자치구의회 간 정보교류를 강화하여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

【1】 정기총회

- 일 시 : 2016년 1월 29일(금) 11:00
- 장 소 :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
- 소요예산 : 49,300천원
- 참석대상 : 226명(시군자치구의회 의장)
- 주요내용
 - 제8회 의정봉사대상 시상 등
 - 2015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
 - 2015년도 예산결산 감사 보고 및 2016년도 예산 보고

【2】 시도대표 정례회의

- 개최일 : 매월 셋째 주 화요일
- 참석대상 : 15명(시도대표회장)
- 주요내용 : 안전심의 및 주요현안사항 토의, 지역별 정보교환 등

【3】 시도대표 임시회의

- 시 기 : 필요시 임시회의 소집
- 참석대상 : 15명(시도대표회장)
- 주요내용 : 긴급 당면 현안사항 논의



[4] 지방4대협의회 활동 강화

- 시 기 : 연중
- 방 법 : 지방4대협의회 결성으로 협의회 역할제고 및 지방자치 공동현안에 대한 대국회·정부 협상력 강화
- 주요내용
 - 지방분권형 개헌 활동 강화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
 - 지방자치박람회 공동 주관 추진
 - 지방4대협의회 공동자문단 구성·운영 등

[5] 의정활동 및 지방의원 권익강화 자문단 운영

- 시 기 : 연중
- 방 법 : 협의회 자문위원, 전문위원을 통한 자문단 운영
- 주요내용
 - 기초의회의원 권익증진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방향
 - 조례제정 등 의정활동 관련 질의

[6] 협의회 활동상황 적극 홍보

- 시 기 : 연중
- 홍 보 처 : 신문사, 잡지사 등 지방자치 관련 매스컴 활용
- 소요예산 : 5,000천원
- 주요내용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중점추진시책 추진상황 적극 홍보
 - 시도대표회 언론 보도내용 및 협의회 활동상황 홈페이지 게재
 - 협의회 일정, 주요활동사항, 안건처리 등 신속한 정보 제공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역량 제고

- ◆ 자문위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현안문제 해결 및 의장단 역량 강화로 협의회 위상 제고와 활동방향 제시

[1] 자문위원 등 간담회 개최

- 회의개최 : 연 2회
- 소요예산 : 4,750천원
- 대 상 : 협의회 회장단, 자문위원, 고문(여건에 따라 시도대표회장 전원)
- 주요내용 : 지방의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실현방안 강구

[2] 실무협의회 운영

- 회의개최 : 연 1회
- 대 상 : 15명(시도대표회 의회사무국·과장)
- 소요예산 : 1,000천원
- 주요기능
 - 당면사항 협의
 - 협의회 운영에 대한 종합계획 및 중요사항 검토

[3] 협의회 중점추진시책 활동 강화

- 일 시 : 2016년 연중
- 대 상 : 청와대, 국회, 중앙부처 등
- 내 용 : 지방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및 지방의원 의정비 합리적 개선 등 협의회 중점추진시책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청와대, 국회 및 중앙부처에 강력 요구



【4】국회도서관과 시·군·자치구의회 간 협력사업 지원

○ 개요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원활한 입법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정보 교류를 통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국회도서관과 시군구의회간의 협력사업 지원

○ 경과

-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 개통(2015. 6. 4) : 17개 광역의회 시스템연계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회장협의회, 국회도서관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15. 8. 6)
- 청주시의회 등 10개 시의회 시스템 연계 및 서비스(2016. 1. 24)

○ 주요사업내용

- 국회·지방의회의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의정자료 공유시스템 구축 및 공동활용 협력
- 국회도서관과 시군자치구의회간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지원
 -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에 국회전자도서관 등 국회도서관 주요 정보시스템 제공 협력

※ 국회도서관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간 주요 협력내용

- 의회·법률정보서비스 제공 : 메일링서비스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제공
- 국회전자도서관(자체원문 400만건+외부연계목록 1억5천만건) 및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회도서관 정보시스템 제공
 - ⇒ 이용 과금 지원 및 이용 편의 제공
- 시군자치구의회에서 생산된 각종 회의록, 의정자료(전자파일 포함), 정책자료, 지방정부자료 제공 및 공동활용
- 기타 지방의회 중요기록물 보존협력 및 소장자료 대출 등 상호 협력사항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

<http://clik.nanet.go.kr>

- ▶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널리 알릴 수 있고,
- ▶ 지방의회의 의안·회의록 등 각 지방의회의 의정 자료를 공유하며,
- ▶ 국회의 의안·회의록정보 및 국회전자도서관 등 국회 도서관의 주요 전자정보를 제공합니다.

국회도서관에서는 정보교류를 통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시·군·자치구의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협약체결 : 기획담당관실(02-788-4243)
- 지방의회 협력 및 시스템 이용 : 정치행정정보과(02-788-4367)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협의회 활동 강화

- ◆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분권 국민의식 확산을 위하여 각급 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 공동협력방안 구축 및 지방분권 활동 전개
- ◆ 대통령 및 국회 방문 면담을 통하여 지방분권, 특히 지방의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1】 지방4대협의체 등 정책간담회 개최

- 회의개최 : 연 2회
- 참석 :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행정자치부 관계자 등
- 소요예산 : 1,000천원
- 주요내용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 등 공동협력 체제 구축

【2】 지방분권을 위한 활동 전개

□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

- 일시 : 2016.1. 14(목)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 참석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지방신문협의회,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등
- 내용 :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 개최

□ 중앙권한이양 제2실무위원회

- 일시 : 연중
- 장소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참석 : 실무위원, 간사(과장), 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계공무원
- 내용 : 중앙부처 권한이양 대상 법률, 기능, 사무 심의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연중, 정부서울청사
- 참석
 - 정부위원 : 행정자치부 차관, 지방재정정책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 심의관,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
 - 지방4대협의체 추천위원 및 민간위원
- 심의내용 : 2016년 위원회 운영계획안지방세 감면운영 기본계획,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법률개정안,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적정성 등 심의

□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 일시 : 연중
- 장소 : 정부서울청사
- 참석 : 지방4대협의체, 행정자치부(선거의회과), 법제처(자치법제지원과) 등
- 내용 :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발굴한 조례개선과제 50건에 대한 지방4대협의체의 의견 수렴 등 자치법규지원제도의 발전 도모

【3】 국회 및 정부인사 면담 추진

- 시기 : 2016년 연내
- 대상 : 국회의장, 신당대표, 행정자치부장관 등
- 참석 : 협의회 회장단
- 주요내용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 지방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등 현안사항 건의 등

2015년도



세입 · 세출 결산감사 보고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감사보고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협의회 사무처로부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2016. 1. 18. ~ 1. 22. 동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 자료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결산서의 작성책임은 의장협의회 회장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하는 것입니다.

의장협의회 사무처에서 작성 제출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감사결과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표시 되었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시정권고 등 별첨)

2016년 1월 22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감사 경상북도 대표회장 이철우 (인)

감사 경상남도 대표회장 유원석 (인)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 세입·세출 결산총괄

(단위 : 원)

예산액 ①	결산세입액 ②	집행액 ③	결산세입대비 집행잔액 ② - ③	비 고
1,000,829,000	882,829,391	777,442,578	105,386,813	

□ 세입·세출 결산내역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A)	결산액 (B)	증(△)감 (B-A)	비 고
합 계	1,000,829,000	882,829,391	△117,999,609	
의장협의회 부 담 금	904,000,000	782,000,000	△122,000,000	사전공제납부 서울50,대전10,경기62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96,829,000	96,829,316	316	
이자수입		3,406,731	3,406,731	
잡수입		593,344	593,344	카드포인트, 주유할인



<세 출>

(단위 : 원)

과 목		당초 예산액 (A)	사실상 예산액 (B)	지출액 (C)	예산액대비 집행잔액 (B-C)	비고
세부사업-편성목						
합 계		1,000,829,000	878,829,000	777,442,578	101,386,422	
협 의 회 활 동	소 계	610,300,000	488,300,000	452,276,180	36,023,820	
	행사운영비	98,400,000	98,400,000	69,657,310	28,742,690	
	사무관리비	10,000,000	10,000,000	3,921,600	6,078,400	
	연구용역비	500,000	500,000	500,000	0	
	운영수당	1,400,000	1,400,000	1,400,000	0	
	업무추진비 (회장, 총장)	48,000,000	48,000,000	46,797,270	1,202,730	
	시·도협의회 지원금	452,000,000	330,000,000	330,000,000	0	
사 무 처 운 영	소 계	354,479,000	354,479,000	325,166,398	29,312,602	
	사무관리비	14,830,000	14,830,000	9,664,288	5,165,712	
	임차료	57,396,000	57,396,000	57,396,000	0	
	공공운영비	24,492,000	24,492,000	21,840,670	2,651,330	
	수 당	89,874,000	89,874,000	80,791,090	9,082,910	
	급량비	14,616,000	14,616,000	12,710,000	1,906,000	
	국내여비	32,400,000	32,400,000	27,290,600	5,109,400	
	기타직보수	87,376,000	87,376,000	87,282,750	93,250	
	업무추진비	19,980,000	19,980,000	17,086,000	2,894,000	
	연금지급금	8,715,000	8,715,000	8,715,000	0	
	자산취득비	4,800,000	4,800,000	2,390,000	2,410,000	
예비비	예비비	36,050,000	36,050,000	0	36,050,000	

※ 당초 예산액과 사실상 예산액의 차액 122,000,000원은 서울, 대전, 경기도협의회에서 사전 공제 후 납부하여 차액 발생

□ 총괄

- 당초 세입목표액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 부담금 904,000,000원과 순세계 잉여금 96,829,000원(2014년 이월금)을 합한 총 1,000,82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 실제 세입액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 부담금 782,000,000원(서울, 대전, 경기도 사전 공제 후 납부), 순세계잉여금 96,829,316원, 기타수입 4,000,075원(정기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실제 총 세입액은 882,829,391원입니다.
- 실제 세입액 882,829,391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777,442,578원이며, 집행잔액은 105,386,813원으로 2015 회계연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일반회계 통장잔고와 일치하며, 사무실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은 별도 고정자산으로 관리됩니다.

□ 세입분야

- 2015년도 세입예산액 1,000,829,000원과 세입결산액 882,829,391원의 차액은 서울, 대전, 경기도 의장협의회에서 50% 공제 후 납부로 122,000,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수입(정기예금 이자수입 등) 4,000,391원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이며, 2015년 실제 세입액 882,829,391원은 당초보다 117,999,609원이 감소된 세입액입니다.

□ 세출분야

- 2015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협의회 활동비(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시도협의회지원금 등) 452,276,180원과 사무처운영비(사무관리비, 임차료,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 325,166,398원을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감사 총평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2015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자료를 제출받아 5일간 감사한 결과
-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협의회 당면과제 추진을 위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하였으며, 특히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세미나 미 개최 등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음
- 사무처의 업무 연속성을 위해 사무처 파견 직원의 근무기간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시정 및 권고, 지적사항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초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사업 발굴
- 세입의 경우 일부 시도에서 사전 공제 납부로 인하여 세입에 대한 혼선을 초래하므로 전국 시도에서 공제 전 금액의 세입 납부
- 세입 부분의 지방의회 부담금 중 시도협의회 지원금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2016년도 특별회계로 따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정당공천제 및 지방자치법 개정 등 당면현안사항 촉진, 협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사업비 및 홍보비가 4대협의체에 비하여 열악한 수준이므로 향후 예산 수립 시 검토가 필요함
- 협의회 회장의 임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변경됨으로 소속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1년간 근무 후 복귀함으로 지방자치 및 기초의회에 대한 업무 연속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대책 필요
-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하는 각 시·도대표 회장은 소속기관으로부터 관외 출장여비를 수령하고 출장하므로 별도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제187차(7월)~제191차(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총4,800천원을 참석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검토 필요

2016년도



세입 · 세출 예산 보고



2016년 세입·세출 예산

예산 총칙

- 제1조(예산총괄)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009,386천원으로 한다.
- 제2조(세입·세출예산명세)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 제3조(예비비)
예비비는 5,076천원으로 한다.

2016년 세입·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구성비 (%)	전년도 예산액(B)	증감액 (A-B)
합 계		1,009,386	100	1,000,829	8,557
세입	지방의회 부담금	904,000	89.56	904,000	0
	순세계잉여금(이월금)	105,386	10.44	96,829	8,557
합 계		1,009,386	100	1,000,829	8,557
세출	협의회 활동	643,900	63.79	610,300	33,600
	사무처 운영	360,410	35.71	354,479	5,931
	예비비	5,076	0.50	36,050	△30,974

2016년 세입·세출예산 과목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도		2015년도		증감액	비고	
		예산액	구성비 (%)	예산액	구성비 (%)			
합 계		1,009,386	100	1,000,829	100	8,557		
세 입	지방의회부담금	904,000	89.56	904,000	90.33	0		
	이월금	105,386	10.44	96,829	9.67	8,557		
합 계		1009,386	100	1,000,829	100	8,557		
세 출	협 의 회 활 동	소 계	643.900	63.79	610,300	60.98	33,600	
		행사운영비	107,000		98,400		8,600	
		사무관리비	35,000		10,000		25,000	
		학회비	500		500		0	
		운영수당	1,400		1,400		0	
		업무추진비	48,000		48,000		0	
		사도협의회지원금	452,000		452,000		0	
	사 무 처 운 영	소 계	360,410	35.71	354,479	35.42	5,931	
		사무관리비	14,550		14,830		△280	
		임차료	57,396		57,396		0	
		공공운영비	24,492		24,492		0	
		수당	96,775		89,874		6,901	
		급량비	14,616		14,616		0	
		국내여비	32,400		32,400		0	
기타직보수		92,060		87,376		4,684		
연금지급금		9,341		8,715		626		
업무추진비		18,780		19,980		△1,200		
자산취득비	0		4,800		△4,800			
예 비 비		5,076	0.50	36,050	3.60	△30,974		

참 고 사 항



-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칙
-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명단
-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역대
임원 현황
- ◆ 자문위원 현황
- ◆ 제8회 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자 현황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 칙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회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공동 관심사를 협의·조정하여 중앙 및 지역 간의 화합을 이루고, 지방자치 발전과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협의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전국의 특별시, 광역시, 도의 의장협의회 사무소는 각 시·도 내에 둔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와 중앙정부 등 관계 기관에 건의 및 조정·협의한다.
2. 시·도 및 시·군·자치구 상호간의 공통 관심사항 협의 및 조정
3.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 위상정립 및 기능강화와 의정활동 지원·홍보
4. 지방자치제도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자료 배포
5. 그 밖에 협의회 발전을 위한 모든 사업

제5조(회원의 자격) 협의회는 회원은 각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임기) ① 협의회는 회원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날부터 회원이 되며 의장직에서 퇴임과 동시에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② 승계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의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협회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협회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회회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매년 1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 2 장 특별시·광역시·도협의회

제8조(특별시·광역시·도협의회 구성) ① 특별시·광역시·도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는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소속 시·군·자치구회의 의장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협의회 회장은 해당 시·도협의회에서 호선한다.

제 3 장 특별시·광역시·도대표회

제9조(특별시·광역시·도대표회 구성)

① 협회회는 의사결정기구로 특별시·광역시·도대표회(이하 “시·도대표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대표회는 시·도협의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③ 협회회의 회장은 시·도대표회 회장을 겸직하며 시·도대표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시·도대표회 회장 선출) 시·도대표회의 회장은 합의추대를 원칙으로 하되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무기명투표로 선임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2차 투표로 결정한다. 2차 투표결과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다선의원, 연장자 순으로 회장이 된다.

제11조(시·도대표회장의 임기) ① 시·도대표회장의 임기는 협회회의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시·도대표회장 중 결원이 있을 때는 해당 시·도협의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며, 보궐 선출된 시·도대표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회의 소집) 시·도대표회의 회의는 협의회의 회장 또는 시·도협의회의 회장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제20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장이 소집하여 주관한다.

제 4 장 협의회 임원

제13조(임원)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3인
4. 감 사 2인
5. 사무총장 1인
6. 대변인 1인

제14조(임원의 선출) 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출된 시·도대표회의 회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여 시·도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회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총장은 시·도대표회장 중에서 협의회의 회장이 임면한다.

④ 감사는 시·도대표회에서 호선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사의나 유고시 그 직을 직무를 수행할지 못할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임원의 기능)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회계 및 업무 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무총장은 사무총장 업무규정에 의거 사무처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제 5 장 회 의

제17조(회의 및 장소) ① 협의회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시·도대표회의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대표회의 의결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도대표회의 회의는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로 하며, 각 시·도협의회를 순회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협의회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총회) ① 총회의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협의회회의 중요시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회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지방의회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보고사항 중 이견이 있을 경우 시·도대표회에서 재심의 의결한다.

제19조(시·도대표회의) ① 시·도대표회의에서는 제18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대표회가 의결한 사항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 소집) 회의는 협의회회의 회장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집하며, 협의회 회장은 총회 및 시·도대표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의결 정족수) ① 협의회회의 특별한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일 때는 협의회장이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준한다.

③ 회의에 불참사유로 제출된 서면 위임장은 출석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제 6 장 사 무 처

제22조(사무처) ① 협회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대표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 규정으로 한다.

제23조(직원의 임면)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협회회의 회장이 추천하여 시·도대표회 의결을 거쳐 협회회의 회장이 임면하며 협회회의 회장의 명을 받아 협회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③ 협회회는 원활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구에서는 협조하여야 한다.

④ 직원은 사무처장의 추천에 따라 시·도대표회 의결을 거쳐 협회회의 회장이 임면한다.

제24조(전문위원) ① 협회회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지방자치와 협회회 발전을 위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회장이 임면한다.

제 7 장 자문위원 및 고문

제25조(자문위원) 협회회의 회장은 지방자치와 협회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로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고문) ① 협회회에 고문·상임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상임고문은 협회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자로 시·도대표회에서 협의하여 협회회장이 추대한다.

제 8 장 실 무 협 의 회

제27조(구성)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각 시·도대표회장이 속한 지방의회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으로 구성한다.

제28조(기능) ① 실무협의회는 다음과 같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종합 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시행 검토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9 장 재 정

제29조(재원) 협의회의 운영재원은 다음과 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및 지원금
2. 그 밖의 수입

제30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예산) ① 제18조에 의거 시·도대표회의 의결로 확정된 협의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에 필수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협의회장이 집행할 수 있다.

제32조(결산) 감사는 재정의 수입·지출을 결산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부담금 및 재정관리) ① 각 시·군·자치구의회는 부담금 금액은 시·도대표회



회의에서 정하며, 각 시·도협의회에서 수합하여 협의회에 일괄 납부한다.

② 협의회 수입금은 협의회 명의로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협의회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장이 관리한다.

제 10 장 보 칙

제34조(준용규정) 협의회 회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라 준용한다.

부 칙

1. 본 회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칙은 (91년 11월 1일부터 본 회 회칙을 승인받은 날까지) 폐지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3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9.)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2.)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2.18.)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5.26.)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위원 위촉 경과조치) 이 개정 회칙 전에 위촉된 자문위원은 개정된 회칙에 의해 위촉된 자문위원으로 본다.

부 칙(2015.6.30.)

본 회칙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의 장 명 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 명단

▶ 서울특별시(25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2)	FAX
1	종로구	김복동	무소속	삼봉로 43	2148-3811	2148-5971
2	중 구	이경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39길 40	3396-8178	3396-4270
3	용산구	박길준	새누리당	녹사평대로 150	2199-8760	2199-8355
4	성동구	박경준	더불어민주당	고산자로 266	2286-5821	2286-5946
5	광진구	박삼례	더불어민주당	능동로 76	450-1441	454-0439
6	동대문구	김수규	더불어민주당	천호대로 145	2127-5441	2127-5433
7	중랑구	서인서	더불어민주당	봉화산로 179	2094-2005	2094-2009
8	성북구	임태근	더불어민주당	북악산로 949-60	920-1830	920-1846
9	강북구	김동식	더불어민주당	삼각산로 89	901-4561	901-4529
10	도봉구	조숙자	더불어민주당	마들로 656	2091-4750	2289-1704
11	노원구	김승애	더불어민주당	노해로 437	2116-3341	2116-4602
12	은평구	장창익	더불어민주당	은평로 195	351-8301	351-5691
13	서대문구	류상호	더불어민주당	통일로 279-22	330-8801	330-8807
14	마포구	차재홍	새누리당	월드컵로 212	3153-6000	3153-6019
15	양천구	심광식	더불어민주당	목동서로 337	2620-4480	2652-7223
16	강서구	이연구	더불어민주당	등촌로 185	2600-1731	2600-1740
17	구로구	김명조	더불어민주당	가마산로25길 9-24	2083-3801	2083-3862
18	금천구	정병재	더불어민주당	시흥대로73길 70	2627-2444	2627-2127
19	영등포구	박정자	새누리당	국회대로 596	2670-4000	2670-3614
20	동작구	유태철	더불어민주당	장승배기로 161	823-5922	817-3184
21	관악구	이성심	더불어민주당	관악로 145	879-7504	881-5892
22	서초구	최병홍	새누리당	남부순환로 2584	2155-7004	2155-7098
23	강남구	김명옥	새누리당	삼성로 154	3423-8199	3423-8926
24	송파구	임춘대	새누리당	백제고분로 242	2147-3608	2203-1816
25	강동구	성임제	더불어민주당	성내로 55	3425-7363	3423-7295

▶ 부산광역시(16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51)	FAX
1	중 구	김영면	새누리당	중구로 120	600-4600	600-4099
2	서 구	류차열	새누리당	구덕로 120	240-4600	240-4099
3	동 구	오미라	새누리당	구청로 1	440-4600	440-4099
4	영도구	한영현	새누리당	태종로 423	419-4600	419-4099
5	부산진구	강외희	새누리당	시민공원로 30	605-6200	605-6159
6	동래구	천만호	새누리당	명륜로94번길 55	550-4600	550-4099
7	남 구	이호승	새누리당	못골로 19	607-4600	607-4089
8	북 구	김만중	더불어민주당	낙동대로1570번길 33	309-4600	309-4099
9	해운대구	이문환	새누리당	중동2로 11	749-4600	749-4099
10	사하구	노승중	새누리당	낙동대로398번길 12	220-4600	220-4879
11	금정구	홍완표	새누리당	중앙대로 1777	519-5500	519-5509
12	강서구	정옥영	새누리당	낙동북로 477	970-4600	970-4089
13	연제구	주석수	새누리당	연제로 2	665-4600	665-4099
14	수영구	이정희	새누리당	남천동로 100	610-4600	610-4099
15	사상구	김두현	더불어민주당	학감대로 242	310-4600	310-4099
16	기장군	김정우	새누리당	기장대로 560	709-5002	709-5039



▷ 대구광역시(8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53)	FAX
1	중 구	이만규	새누리당	국채보상로139길 1	661-2062	661-2069
2	동 구	허진구	새누리당	아양로 207	662-2072	662-2058
3	서 구	임태상	새누리당	국채보상로 257	663-2061	663-2069
4	남 구	배문현	새누리당	이천로 51	664-2081	664-2089
5	북 구	하병문	새누리당	옥산로 65	665-4031	665-4009
6	수성구	김진환	새누리당	달구벌대로 2450	666-2051	666-2068
7	달서구	배보용	새누리당	학산로 45	667-5807	667-5809
8	달성군	채명지	새누리당	달성군청로 33	668-2061	282-7733

▷ 인천광역시(10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32)	FAX
1	중 구	임관만	새누리당	신포로27번길 80	760-7601	760-7629
2	동 구	김기인	새누리당	금곡로 67	770-6700	770-6749
3	남 구	장승덕	새누리당	독정리로 95	880-4900	880-4974
4	연수구	이창환	새누리당	원인재로 115	749-8310	749-8319
5	남동구	한민수	새누리당	소래로 633	453-5001	453-5029
6	부평구	박종혁	더불어민주당	부평대로 168	509-7000	509-7640
7	계양구	곽성구	더불어민주당	계양대로 126	450-5811	546-0171
8	서 구	이종민	새누리당	서곶로 307	560-5850	560-2797
9	강화군	유호룡	새누리당	강화대로 394	930-3500	930-3509
10	옹진군	김형도	새누리당	매소홀로 120	899-3030	899-3039

▶ **광주광역시 (5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62)	FAX
1	동 구	이선순	무소속	서남로 1	608-3400	608-3468
2	서 구	황현택	더불어민주당	경열로33	360-7500	365-8392
3	남 구	김점기	더불어민주당	봉선로1	607-6001	607-6010
4	북 구	심재섭	더불어민주당	우치로 77	410-8500	410-8289
5	광산구	이영순	국민의당	광산로29번길 5	960-8930	960-8934

▶ **대전광역시(5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42)	FAX
1	동 구	유탉호	새누리당	동구청로 147	251-6062	255-2159
2	중 구	문제광	새누리당	중앙로 100	606-6731	606-6745
3	서 구	박양주	새누리당	둔산서로 100	611-6827	471-5892
4	유성구	노승연	더불어민주당	대학로 211	611-2644	611-2642
5	대덕구	이세형	더불어민주당	대전로 1033번길 20	608-5071	621-2228

▶ **울산광역시(5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52)	FAX
1	중 구	김영길	새누리당	단장골길 1	290-4220	290-4229
2	남 구	안수일	새누리당	돌질로 233	226-2727	226-5270
3	동 구	장만복	새누리당	봉수로 155	209-4002	233-0230
4	북 구	이수선	새누리당	산업로 1010	289-7160	219-7549
5	울주군	조충제	새누리당	문수로 382	257-8100	229-8019



▶ 경기도(31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31)	FAX
1	수원시	김진우	더불어민주당	효원로 241	228-2500	233-5158
2	성남시	박권종	새누리당	성남대로 997	729-5501	757-8047
3	고양시	선재길	새누리당	고양시청로 10	965-5012	8075-9706
4	부천시	김문호	더불어민주당	길주로 210	320-2501	625-8109
5	안양시	천진철	새누리당	시민대로 235	389-2500	389-2855
6	안산시	성준모	더불어민주당	화랑로 387	481-2500	481-3228
7	용인시	신현수	새누리당	중부대로 1199	324-2501	324-2549
8	의정부시	최경자	더불어민주당	시민로 1	828-2501	828-2525
9	남양주시	이철우	새누리당	경춘로 1037	590-2502	590-2529
10	평택시	김인식	새누리당	경기대로 1366	610-8301	610-8349
11	광명시	나상성	무소속	시청로 20	2680-2500	2680-2638
12	시흥시	윤태학	새누리당	시청로 20	317-5470	310-5070
13	군포시	김동별	더불어민주당	청백리길 6	392-4000	392-4004
14	화성시	박종선	더불어민주당	시청로 159	369-2500	369-1523
15	과천시	박재진	새누리당	시청로 66	940-8300	940-8319
16	이천시	정종철	더불어민주당	부악로 40	644-2501	644-2539
17	구리시	신동화	더불어민주당	아차산로 439	557-1500	550-2809
18	김포시	유영근	새누리당	사우중로 1	983-8645	983-8649
19	포천시	정종근	새누리당	중앙로 87	538-2501	538-2429
20	광주시	소미순	새누리당	행정타운로 50	761-4419	760-1425
21	안성시	유광철	새누리당	시청길 25	676-3002	678-3269
22	하남시	김승용	새누리당	대청로 10	790-5307	793-2365
23	의왕시	전경숙	더불어민주당	시청로 11	345-2521	455-4111
24	양주시	황영희	더불어민주당	부흥로 1533	820-5503	820-5539
25	오산시	문영근	더불어민주당	성호대로 141	375-2870	375-2875
26	여주시	이환설	새누리당	세종로 1	887-2500	884-7122
27	양평군	박명숙	새누리당	군청앞길 2	773-4550	770-2820
28	동두천시	장영미	새누리당	방죽로 23	860-2500	860-2661
29	과천시	문봉선	새누리당	관문로 69	3677-2500	3677-2538
30	가평군	조중윤	새누리당	석봉로 181	580-4521	581-2850
31	연천군	이종만	새누리당	연천로 220	839-2510	839-2509

강원도(18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33)	FAX
1	춘천시	김영일	무소속	삭주로 61	245-5002	245-5082
2	원주시	이상현	무소속	시청로 1	737-5001	737-5025
3	강릉시	이용기	새누리당	강릉대로 33	640-4036	640-4070
4	동해시	김혜숙	새누리당	천곡로 77	530-2291	531-8745
5	태백시	유대호	더불어민주당	태백로 21	550-2508	553-7701
6	속초시	김진기	새누리당	중앙로 183	639-2500	631-9175
7	삼척시	정진권	새누리당	대학로 81	570-3501	570-3148
8	홍천군	허남진	새누리당	희망로 51	430-2300	430-2529
9	횡성군	한창수	새누리당	태기로19번길 9	345-6969	340-2587
10	영월군	조정어	새누리당	하송로 64	370-2500	374-1052
11	평창군	유인환	새누리당	군청길 77	330-2500	333-7626
12	정선군	차주영	새누리당	봉양3길 20	560-2580	562-5203
13	철원군	배병인	새누리당	삼부연로 51	450-4364	450-5508
14	화천군	이흥일	새누리당	화천새싹길 40	440-2711	442-2710
15	양구군	김 철	무소속	관공서로 38	480-2500	481-9120
16	인제군	한의동	새누리당	인제로187번길 8	460-2151	460-2419
17	고성군	김형실	새누리당	고성중앙길 9	680-3501	680-3519
18	양양군	최홍규	새누리당	남문로 39	671-4809	670-2670



▶ 충청북도(11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43)	FAX
1	청주시	김병국	새누리당	상당로 155	200-6600	220-6619
2	충주시	윤범로	무소속	으뜸로 21	850-2920	852-1378
3	제천시	성명중	새누리당	내토로 295	641-4771	645-6411
4	보은군	박범출	새누리당	군청길 38	540-3511	540-3519
5	옥천군	민경술	새누리당	중앙로 99	730-3931	733-9225
6	영동군	여철구	새누리당	동정로 1	740-3032	740-3039
7	증평군	우종한	새누리당	삼보로 28	835-3181	835-3094
8	진천군	신창섭	새누리당	상산로 13	539-3771	533-0586
9	괴산군	박연섭	새누리당	임격정로 92	830-3581	833-9986
10	음성군	남공유	새누리당	중앙로 173	871-2221	871-2229
11	단양군	이범윤	새누리당	중앙1로 10	422-9501	420-3019

▶ 충청남도(15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41)	FAX
1	천안시	주명식	더불어민주당	번영로 156	521-2501	561-2529
2	공주시	이해선	무소속	봉황로 1	840-8000	850-2517
3	보령시	류봉석	새누리당	성주산로 77	930-3500	930-3668
4	아산시	유기준	더불어민주당	시민로 456	540-2500	540-2891
5	서산시	장승재	더불어민주당	관아문로 1	660-3340	660-2751
6	논산시	임종진	새누리당	시민로210번길 9	730-3500	730-3660
7	계룡시	김혜정	새누리당	장안로 46	840-2700	840-2749
8	당진시	이재광	새누리당	시청 1로 1	350-4845	355-1901
9	금산군	김왕수	새누리당	군청5길 53	750-2801	750-2829
10	부여군	김태호	새누리당	사비로 33	830-2705	830-2739
11	서천군	한관희	새누리당	군청로 57	950-4500	952-7630
12	청양군	심우성	새누리당	문화예술로 222	940-2500	940-2539
13	홍성군	이상근	새누리당	아문길 27	630-1901	630-1787
14	예산군	김영호	새누리당	사직로 33	339-7050	339-7099
15	태안군	박남규	새누리당	군청로 1	670-2503	670-2510

▶ 전라북도(14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63)	FAX
1	전주시	박현규	더불어민주당	노송광장로 10	230-3500	230-3650
2	군산시	진희완	더불어민주당	시청로 17	450-5810	452-8155
3	익산시	조규대	더불어민주당	인북로32길 1	859-4000	859-4058
4	정읍시	우천규	더불어민주당	충정로 234	539-6000	536-5355
5	남원시	장종한	더불어민주당	시청로 60	620-5001	620-5059
6	김제시	정성주	더불어민주당	중앙로 40	540-2700	540-2792
7	완주군	정성모	더불어민주당	지암로 61	290-2500	244-7418
8	진안군	이한기	더불어민주당	중앙로 67	430-8901	433-4763
9	무주군	이한승	더불어민주당	주계로 97	320-2500	320-2509
10	장수군	오재만	더불어민주당	호비로 10	350-5601	350-2639
11	임실군	문홍식	무소속	수정로 30	640-2691	640-2699
12	순창군	이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천로 33	650-1010	652-6782
13	고창군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중앙로 245	560-2801	560-2759
14	부안군	임기태	더불어민주당	당산로 91	580-4500	580-4099



▶ 전라남도(22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61)	FAX
1	목포시	조성오	더불어민주당	양을로 203	270-3500	270-8031
2	여수시	박정채	더불어민주당	여서1로 121	690-7000	690-7021
3	순천시	김병권	더불어민주당	장명로 30	749-3500	749-3507
4	나주시	홍철식	더불어민주당	시청길 22	330-8500	330-7820
5	광양시	서경식	더불어민주당	행정2길 5	797-2500	797-2595
6	담양군	윤영선	더불어민주당	추성로 1371	380-3500	380-3590
7	곡성군	이국섭	더불어민주당	군청로 50	363-4450	363-7764
8	구례군	서은식	더불어민주당	봉성로 1	780-2500	782-1331
9	고흥군	장세선	더불어민주당	홍양길 40	830-5500	830-5506
10	보성군	김판선	더불어민주당	송재로 165	850-5800	853-0351
11	화순군	이 선	더불어민주당	동헌길 23	374-0701	374-0756
12	장흥군	곽태수	더불어민주당	장흥로 21	863-6063	863-6067
13	강진군	김상윤	더불어민주당	탐진로 111	430-3500	430-3509
14	해남군	이길운	더불어민주당	군청길 4	535-4101	530-5595
15	영암군	이하남	국민의당	군청로 1	471-0994	470-2595
16	무안군	이요진	더불어민주당	무안로 530	450-5500	450-5595
17	함평군	정수길	더불어민주당	중앙길 200	320-2522	320-3451
18	영광군	김양모	더불어민주당	중앙로 203	350-5500	351-1380
19	장성군	김재완	더불어민주당	영천로 200	390-7500	390-7595
20	완도군	김동삼	더불어민주당	청해진남로 51	554-0153	554-8894
21	진도군	주선중	더불어민주당	철마길 25	540-3500	540-3586
22	신안군	양영모	무소속	천사로 1004	243-9211	240-8000

경상북도(23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54)	FAX
1	포항시	이철구	새누리당	시청로 1	270-0200	270-0222
2	경주시	권영길	새누리당	양정로 260	779-6850	760-7439
3	김천시	김병철	새누리당	시청1길 223	432-3001	433-9342
4	안동시	김한규	새누리당	퇴계로 115	856-3100	840-6409
5	구미시	김익수	새누리당	송정대로 55	450-6400	451-3930
6	영주시	박찬훈	새누리당	광복로 65	639-7200	631-2372
7	영천시	권호락	새누리당	시청로 16	330-2950	330-2989
8	상주시	남영숙	새누리당	중앙로 111	535-1700	535-9854
9	문경시	이응천	새누리당	중앙로 50	550-8030	550-8039
10	경산시	이천수	새누리당	남매로 159	053-811-4777	811-4778
11	군위군	김윤진	새누리당	군청로 200	380-6400	380-6409
12	의성군	신원호	새누리당	후죽5길 24	830-6400	832-3595
13	청송군	이광호	새누리당	군청로 51	873-5798	870-6409
14	영양군	김시홍	새누리당	군청길 37	680-5001	680-5029
15	영덕군	이강석	새누리당	군청길 116	730-6400	730-6409
16	청도군	예규대	새누리당	청화로 70	370-6400	370-6409
17	고령군	이달호	새누리당	왕릉로 55	950-6400	954-1186
18	성주군	곽길영	새누리당	성주로 3200	933-4208	933-8125
19	칠곡군	장세학	새누리당	군청1길 80	973-0101	973-0104
20	예천군	이철우	새누리당	군청앞길 2	650-6403	650-6409
21	봉화군	황재현	새누리당	봉화로 1111	673-5840	673-6802
22	울진군	임형욱	새누리당	울진중앙로 121	789-6400	789-6409
23	울릉군	이철우	새누리당	도동길 143	790-6400	790-6409



▶ 경상남도(18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55)	FAX
1	창원시	유원석	새누리당	중앙대로 151	225-5003	225-4743
2	진주시	천효운	새누리당	동진로 155	749-5637	749-2844
3	통영시	강혜원	새누리당	해안로 515	650-2903	646-2245
4	사천시	김현철	새누리당	용현면 시청로 77	831-3900	831-3949
5	김해시	배창한	새누리당	김해대로 2401	340-7102	340-7269
6	밀양시	허 홍	새누리당	밀양대로 2047	359-6202	359-6236
7	거제시	반대식	새누리당	계룡로 125	639-7202	639-7259
8	양산시	한옥문	새누리당	중앙로 39	392-8503	392-8519
9	의령군	오 용	무소속	충익로 63	570-2062	570-2079
10	함안군	김정선	새누리당	말산로 5	580-2902	580-2929
11	창녕군	손태환	새누리당	군청길1	530-6001	533-6303
12	고성군	최을석	무소속	대가로 13	670-5700	670-5759
13	남해군	박광동	새누리당	망운로 9번길 12	860-3400	860-3738
14	하동군	김봉학	새누리당	군청로 23	880-2900	880-2939
15	산청군	민영현	새누리당	산엔청로 3	970-7400	973-7638
16	함양군	황태진	새누리당	고운로 35	960-5050	960-5703
17	거창군	이성복	새누리당	중앙로 103	940-8001	940-8059
18	합천군	허종홍	새누리당	동서로 119	930-3600	930-36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역대 임원 현황





전국의장협의회 역대 임원 현황

▶ 초대 전·후반기

회 장	부회장	감 사	이 사
이종원	김익주 최진호	권영환	문기현, 김장환, 이계동, 조정환, 고화영 김동진, 나상규, 강영진, 이용득, 정한재 고의돈

▶ 제2대 전반기

회 장	부회장	이 사
김진유	양윤식 최진호	리길웅, 정태섭, 장승호

▶ 제2대 후반기

회 장	고 문	부회장	감 사	운영위원
김형수	이종원 양윤식	최진호, 리길웅 정태섭, 박희영	조길휘 장승호	손영수, 선형채, 김무열 오면교, 박재수, 남용길 오선범

▶ 제3대 전반기

회 장	부회장	감 사	이 사
김중응	박연석 정태섭 류광현	신치범 윤창호	이재혁, 이장수, 정동배, 추상은, 서진근 장상훈, 신병희, 박영수, 임창규, 허동섭

▶ 제3대 후반기

회 장	부회장	감 사	이 사
정금영	마학관 이창호 장상훈	김대희 한성율	김한민, 신병희, 김정태, 김성만, 김용서 박장열, 이원식, 박종호, 김기환, 정동배

※ 부산광역시 대표회장은 2000. 7. 1 부산진구의회 구태희 의장으로 변경

▶ 제4대 전반기

회장	상임부회장	부 회 장	감 사
이재창	김창순, 변양섭 이종호, 정옥성 공원식	송석복, 정태민, 정상진 최주용, 이건설, 이용학 박종윤, 강영철	김송식 배종갑

※ 최병훈 충북대표회장은 2004. 1. 31자로, 장상훈 충남대표회장은
2004. 2. 14자로 의원직 사임



▶ 제4대 후반기

회장	수석 상임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감 사
이재창	공원식 이정원	조홍제, 장동호 유기영, 박규배	김기성, 차경섭, 오태진 김두겸, 주재민, 김정국 정복영, 지종환	박관년 박삼래

※ 이영신 경남대표회장은 2004. 12. 28자로 의원직 사임, 2005. 7. 29
경북 대표회장 공원식 수석상임부회장이 김정국 회장으로 변경,
2005. 12. 28 공석이던 수석상임부회장에 이정원 충남대표회장 선출

▶ 제5대 전반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 사
정동수	정우성	김진성, 김경동, 윤창열, 조영복, 이의규, 박성민, 이수영, 남동우, 이충재, 나익수, 김철곤	이건실 최학철

▶ 제5대 후반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 사
윤규진	조홍제	장상수, 이언기, 오향섭, 설장수, 박래환, 형남선, 원경목, 고용길, 최찬욱, 장복성, 김영립	김준배 김천일

※ 이건실 전국회장(강원대표회장)은 2009. 6. 16자로 회장직 사임
※ 2010. 6. 2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임 윤규진 전국회장(서울대표회장)은
2000. 5. 4자로 사임, 박래환 부회장(울산대표회장)은 5. 3자, 김준배 감사
(충남대표회장)는 4. 2자, 김천일 감사(경북대표회장)은 4. 12자,
장복성 사무총장(전남대표회장)은 3.17자로 사임

▶ 제6대 전반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 사
이상구	윤호길	성임제, 도영환, 신은호, 권용일 박종서, 장만복, 권혁록, 연철흙 조지훈, 김상복, 황영상	김강수 김동욱

※ 2012년 총선과 관련하여 김기완 수석부회장(경기도대표회장)은 2012. 1. 12일자로 사임

▶ 제6대 후반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 사
김인배	박용모	류차열, 조재구, 유재호, 김동찬, 김종성, 이순걸, 임기중, 이명연, 배종범, 김근환, 배종천	김복만 노영관

※ 2013. 8. 31자로 김종성 사무총장이 사임하여 2013. 10. 15. 노영관 감사가 사무총장 선임, 감사가 1인이 되었음

▶ 제7대 전반1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 사
심우성	임태상	성임제, 천만호, 이종민, 이영순, 문제광, 김영길, 박권중, 정진권, 김병국, 우천규, 이철우	양영모 유원석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자문위원 현황





자문위원 현황

직 위	성 명	메 일	연락처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정세욱	swcsyl@hanmail.net	010-5218-9008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이사장	임경호	rilc@rilc.re.kr	011-9152-7393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강형기	kanghk@chungbuk.ac.kr	010-5332-5971 043-237-2196(연구소) 043-261-2199(학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기우	leekw@inha.ac.kr	010-6249-0648
경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근열	kychoe@kiu.ac.kr	010-3072-7430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교수	육동일	diyook@cnu.ac.kr	010-5453-0612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한상우	sangw@hanyang.ac.kr	010-7160-3358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최민수	cmsool1919@naver.com	010-5206-1556
배재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원장	최호택	htchoi@pcu.ac.kr	010-8849-5566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	박재율	pspyj@hanmail.net	010-4124-8755



제8회 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자 현황





제8회 의정봉사대상 수상대상자 현황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요 공 적	비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심광식	59.1.25.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경쟁력 있는 양천만들기 등 현장 의정활동 위축된 지역상권 살리기에 앞장 기부문화 확산 노력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정병재	45.11.25.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활하고 합리적인 의회운영 및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구현 집행부 견제와 감시 및 상호존중으로 화합과 상생의 의정활동 교육환경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 계획 반대 결의안」 등 주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임춘희	55.1.24.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원활하고 합리적인 의회운영 ‘TV서울 개국 2주년 기념식’ 기초 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계층 지원에 기여 집행부의 견제자 및 동반자로서의 역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	김정우	64.5.16.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민의 대표자로서 성실한 의정활동 수행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 의정활동 적극적 전개 및 지원 입법활동, 군정질문, 5분 발언, 민원 처리 등 적극적 의정활동 군민에게 열린 의회 만들기에 기여 봉사활동에 솔선수범 의장협의회 활동 적극 참여 및 의원 권익증진 노력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요 공 적	비고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이만규	54.11.11.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철한 국가관과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에 기여 ◦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 ◦ 기초의회 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성숙된 의원상 정립 ◦ 주민이 필요로 하는 의회상 제고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의장)	김형도	57.9.15.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결하고 화합하는 의회상 정립에 앞장 ◦ 주민들과 고통을 나누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모범 ◦ 군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 ◦ 합리적인 견제를 통해 주민복지증진에 앞장 ◦ 지역현안사항 해결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선 안정적 운항 대책 마련 및 준공영제 도입, 영흥주민 건강검진 모니터링 도입 등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조상현	63.5.24.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의원 윤리의식 제고 ◦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 ◦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량 발휘 및 합리적인 대안제시 ◦ '선진의회, 정책의회' 구현에 기여 ◦ 구의회 효율적인 운영 및 의원 화합과 집행기관 관계정립 도모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이세형	67.4.10.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만들기 조례연구회' 구성 ◦ 내실있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한 시정 조치 및 정책반영 ◦ 경기침체에 따른 예산절감 및 국책사업 유치 ◦ 구민 복지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매진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요 공 적	비고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장만복	47.11.11.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회기 운영 및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구현 ◦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구현 ◦ 실력 있고 전문적인 의회상 확립에 기여 ◦ 자원봉사를 통해 행복한 동구 만들기 ◦ 의정능력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 ◦ 사회적 약자와 어린이를 위한 의정 활동 	
경기도 성남시의회 (의장)	박권종	59.6.22.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시의회 의장으로서 모범적인 의회상 구현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 ◦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입안활동 ◦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및 감시 역할 ◦ 의원간 화합유도 및 원만한 의회 운영에 기여 	
경기도 여주시의회 (의장)	이환설	60.3.23.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의 날(매주 화요일) 개최(28회) ◦ 찾아가는 의정의 날 최초 개최 ◦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포럼 개최 ◦ 여주시의회 홈페이지 개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규제 개혁 발굴(48건) ◦ 진정민원 처리(24건) ◦ 국내 벤치마킹(5회) ◦ 여주 국제대학가요제 유치 	
경기도 하남시의회 (의장)	김승용	59.3.30.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 ◦ 활발한 입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예산심의 ◦ 하남발전의 동반자로서 협력과 견제를 통한 합리적 의정운영 ◦ 봉사자로서의 의원상 정립 ◦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의회 운영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요 공 적	비고
강 원 도 강릉시의회 (의장)	이용기	57.3.25.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발전 및 현안해결을 위한 건의문 발의(15건) ◦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생 조례 제·개정(18건) ◦ 올바른 시정방향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자료 요구 (200건) - 각종 위원회 활동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부의장)	유재숙	60.9.26.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전개 ◦ 여성 최초 부의장으로서 열린의회 구현 및 지역현안 문제해결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등 6건 조례·규칙 제·개정 ◦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역할 정립 	
충청남도 금산군의회 (의장)	김왕수	54.10.26.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민을 위한 대의기구로서 집행부 견제 ◦ 지역숙원사업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라늄광산 저지, 약사법 통과 ◦ 집행부와 상호협력으로 군정 발전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산인삼 세계농업유산 등재 도전 -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조직위 출범 	
전라북도 순창군의회 (의장)	이기자	57.3.15.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창군의회 최초의 여성의장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의정활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원 발의 및 대법원 제소 승소 등 - 노인, 아동, 소외계층,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제안 ◦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활동 전개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요 공 적	비고
전라남도 광양시의회 (의원)	문양오	59.2.26.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원장으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활발한 의정활동 전개 ◦ 광양시 발전을 생각하는 선구자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 동부권 예술고등학교 및 전남도립미술관 유치 등 ◦ 소외된 계층 및 인재육성 등 지역 어려운 이웃에 남다른 열정 	
전라남도 보성군의회 (의장)	김판선	57.1.1.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 ◦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 ◦ 집행부 감시·견제로 군정발전 촉구 ◦ 주민생활환경 개선방향 집행부에 건의 ◦ 사회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 봉사 활동에 헌신 	
경상북도 안동시의회 (의장)	김한규	53.4.12.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앞장 ◦ 행복안동 건설을 위해 지역현안에 적극 대처 ◦ 합리적 견제기능 수행으로 집행부의 정책 개선과 대책방안 제시 ◦ 지방재정 건전성 및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 ◦ 신뢰받는 의회 및 의원상 정립 	
경상북도 의성군의회 (의장)	신원호	50.3.5.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 역량강화(자기계발) 및 의회 위상 제고 ◦ 조례 제·개정을 통한 군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 ◦ 지역발전 방안의 적극적 모색 ◦ 현장방문을 통한 의정활동 수행 ◦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 ◦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요 공 적	비고
경상남도 창원시의회 (의장)	유원석	60.3.3.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창원시 갈등 해소와 화합 도모 ◦ 경남시군의회 간 의정 정보 공유 및 화합 유도 ◦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 시민의 대표이자 진정한 주민의 봉사자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장)	민영현	49.12.21.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저한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 ◦ 진정한 지역 주민의 봉사자 	

2016년 정기총회

발행일 : 2016. 1. 29.

발행처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6 현대토평스 1207호)

발행인 : 천만호 전국대표회장

전 화 : 02-3444-5910, 5915

팩 스 : 02-3444-5918

Homepage : www.ncac.or.kr

인 쇄 : 위너스기획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31길 2-1
(코리아B/D 201호)

☎ 02-2268-0494~6